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4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의 겸직금지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성주군 군의회 의원의 위촉규정이 있는 자치법규 중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에 대하여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(겸직 등 금지) 의원 겸직 금지규정에 따라 “지방의회의원” 삭제(안 제10조제3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5항(겸직 등 금지)
나. 관련공문 : 기획감사실-5253(2010.10.24) 각종위원회 군의회 의원 위촉관련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통지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라. 기 타 :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(2) 입법예고 : 생략(성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)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촉직 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사회단체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관심과 풍부한 식견,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생 략)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 1.(생 략) 2.위촉직 위원 : 지방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 ~ ⑥ (생 략)	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**2. 위촉직 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사회단체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관심과 풍부한 식견,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** ④ ~ ⑥ (현행과 같음)